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 선고 2017가단516402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의
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2 선고 2018나7625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 선고 2017가단5164021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

담당변호사 이관희

피 고 1. 대한민국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

담당변호사 김나라

2. 화성시

3. B

피고 2,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

변론 종결 2018. 8. 30.

판결 선고 2018. 11. 1.

주 문

1.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경기도 화성시 C 임야 304㎡에 관하여 2001. 3. 3.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의 피고 화성시,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가.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.나. 원고와 피고 화성시,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 화성시,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화성시 D리(이하 'D리'라고 한다) E 전 807㎡, F 전 1,446㎡, G 임야 793㎡, H 임야 513㎡의 소유자이다.

나. 지적도상 원고 소유인 E 토지, H 토지, F 토지, I 소유인 J 대 324㎡, K 소유인 L 전 5,031㎡ 사이에 주문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하고 I, K 소유 각 토지를 '이 사건 각 인접 토지'라 한다)가 있다. 이 사건 토지는 2015. 12. 1. 지적복구되었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E토지, H토지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각인접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. 2.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,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2015. 5. 19. 이 사건 각인접 토지에 대한 2015. 1. 22.자

등록사항정정(경계·면적) 측량성과는 잘못되었다고의결하였다. 다만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E 토지, H토지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.

라. 원고는 2015. 9. 30., 2016. 11. 29. 2회에 걸쳐 피고 화성시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인 E 토지, H 토지에 편입되어야 하므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면적을 실체관계에 맞게 정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, 피고 화성시는 2015. 10. 8., 2016. 12. 7. 원고에 게 원고 소유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다.

마. 피고 대한민국은 2016. 3. 11. 임야대장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. 12. 1. 자지적복구를 이유로 한 소유자등록을 하고, 2016. 10. 20.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[인정증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1 내지 31, 을나1, 2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대한민국

갑32 내지 36, 증인 M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는 1981. 3. 2.부터 2001. 3. 3.까지 이 사건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고 원고 소유인 E 토지, H 토지로 통하는 농로로 이용하여 이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고,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.

피고 대한민국은 2016. 3. 1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시효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2016. 3. 1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로서 비로소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. 피고 대한민국은 2001. 3. 3. 취득시효 완성 후 새로운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. 3. 3.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화성시, B

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 토지에 귀속됨에도, 위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정정신청을 반려하고 2016. 10. 20.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

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.

앞서 본 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,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2015. 12. 1. 지적복구되어 비로소 지번이 부여된 점, ②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인 E 토지, H 토지에 귀속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원고 소유라고 기재된 공적 장부가 없었던 점, ③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의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가 E 토지, H 토지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, ④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려처분, 지적복구,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위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화성시,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.

판사 남인수